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박 상 기
법무부장관

●법률 제1598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1 중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범정형을 치사의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치사의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